

참가신청서

1. 참가업체 정보

회 사 명	(국문)	대 표 자 명	
	(영문)	홈 페이지	http://
주 소	(우편번호)		
담 당 자	성 명	소속 / 직위	
	전 화	(사무실)	팩 스
		(핸드폰)	이 메 일
출 품 분 야	<input type="checkbox"/> Mobile Platform/Solution (Mobile OS&Platform, Consumer Solution, Payment Solution, Business Solution, Information Security Solution, Marketing Solution, e-Learning Solution) <input type="checkbox"/> Mobile & IT Convergence (Cloud Computing, Big Data, IoT Solution & Device, Smart Grid, Smart City, VR, 3D Printing, AI, Drone, Robot, Smart Car, Shipbuilding, etc) <input type="checkbox"/> Mobile Peripherals/Accessories (Smart Device, Accessories, Electronic Equipment) <input type="checkbox"/> Technology & Equipment (Wireless Technology, Wireless Network Equipment, Broadcasting Equipment)		
전 시 품 목	구 체 명 기		

2. 참가 신청 (해당 항목에 V표 및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단 가	부 스 수	금 액	제 공 사 양
<input type="checkbox"/> 조립 일반형	2,600,000원	부스	원	3면벽체, 안내데스크, 상호간판, 조명/전기 등 포함
<input type="checkbox"/> 조립 고급형	3,500,000원	부스	원	고급형부스, 상담테이블 및 일반형부스 제공사항 포함 (최소 2부스 이상 신청가능)
<input type="checkbox"/> 독 립 부 스	2,200,000원	부스	원	업체 직접 부스시공 (최소 4부스 이상 신청가능)
<input type="checkbox"/> 스탠딩 부스	500,000원	부스	원	1~2인용 배너, 기본 조명/전기 포함 (1부스만 신청가능)

* 부스의 기본 단위는 3mx3m로서 9㎡의 배수로 신청 가능하며, 상기 금액은 부가세별도 기준입니다.

3. 할인 내역 (해당 항목에 V표 및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할인요율	할인조건	적용 할인액
<input type="checkbox"/> 조 기 신 청	■ 조립(일반형)부스 : 700,000원/부스 ■ 조립(고급형)부스 : 1,000,000원/부스 ■ 독 립 부 스 : 600,000원/부스	2016. 5. 31(화)까지 신청 및 참가비 납부업체에 한함	원
<input type="checkbox"/> 수 출 초 보 기 업	20%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재 참 가	15%	'14, '15년 참가한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단 체 관	20~30%	규모에 따라 별도요율 적용	

*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스타트업 부스는 할인적용 없음

할인적용 참가비 (부가세별도)	원
------------------	---

1:1 수출상담회 신청 (참가비 없음) 예 아니오

당사는 이면에 수록된 『2016 글로벌모바일비전 참가 규정』을 준수하며, 위와 같이 전시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시회 참가규정

전시회 참가 규정은 원활한 전시회 개최를 위해 전시 주최자와 참가업체 상호간에 준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참가업체는 하기 참가 규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가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 제 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온라인 신청(또는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16 글로벌모바일비전'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글로벌모바일비전 전시사무국("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류로 13 에 소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 에 소재하는 (주)킨텍스")을 말한다.

● 제 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gmv.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참가신청서 양식에 의거, 작성 및 날인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한다.
2.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신청(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참가비 납부가 확인되었을 경우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 3조 (참가비 납부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 후 7일 이내에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중 반액을 계약금으로 한다.
2. 기술지원 사용료는 신청 마감기한 내(2016.8.31(수)) 납부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신청이 신청 마감기한 이후 확정된 경우에는 행사개최 2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 제 4조 (부스 위치 배정)

1. 주최자는 참가비 납입 순서에 따라 전시품목, 기존 참가실적, 신청규모 등 합리적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전시자의 부스 위치를 배정하고,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에 전시부스 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받은 전시 면적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 제 5조 (전시물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접촉제 등으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주최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
6.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7. 주최자는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 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및 해약)

1. 전시자가 계약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취소통보가 2016년 9월 21일(수)까지 접수된 경우 기 납부한 참가비 중 계약금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동 취소통보가 2016년 9월 21일(수)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참가비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제2항과 별도로 기술지원 사용료는 취소일자와 상관없이 전액 반환한다.
4.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환불하지 않은 참가비는 차기 개최되는 전시회의 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5. 전시자가 참가비를 2016년 8월 31일(수)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 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 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제 10조 (전시장 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전시품 반입, 설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과 전시품의 훼손과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 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규정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2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킨텍스(KINTEX)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3조 (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